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88

발의연월일: 2021. 4. 29.

발 의 자:이형석·조오섭·임호선

박 정・송갑석・이병훈

유영덕 · 서영교 · 유후덕

민홍철 · 안규백 · 윤준병

이수진 · 정성호 · 이해식

의원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다수의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7조의4(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임용권자는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상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대민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민원인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치 요구를 이유로 징계 및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7조의4(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임용권자는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이 조에서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민원인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대민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 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치 요구를 이유로 징계 및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